

경쟁 관련 사안

경쟁법 집행 (제16.1조)

- ▣ 경쟁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절차 및 협력에 대한 내용을 규정
- 경쟁법 집행시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 부여
- 행정 심리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및 증거제출권,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, 증인 등에 대한 교차신문권 보장 및 행정 심리에 대한 절차 규칙을 공표
-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구제에 대한 재심 기회 부여
- 경쟁 당국간 상호지원 · 통보 · 협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해 협력

동의의결제 (제16.1조 제5항)

- ▣ 경쟁분야에서 경쟁법 집행당국이 경쟁법 집행 조치 대상자와 상호 합의하여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 조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 당국에 권한을 부여(동 합의는 사법적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음)

지정 독점(제16.2조) 및 공기업(제16.3조)

▣ 지정 독점의 의무

- ① 지정독점이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정부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
 - ②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(단, 아래 ③ 및 ④의 의무에 합치하는 한도에서 독점과 관련된 지정 조건(terms of designation)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)
 - ③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적용대상투자, 상대국의 상품,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대우 제공
 - ④ 비독점 시장에서 적용대상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하는데 자신의 독점적 지위 이용 금지
- ※ 지정독점(designated monopoly) :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정부에 의해 상품·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기관 (자연독점은 해당되지 않음.)

▣ 공기업의 의무

- ① 공기업에 위임된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
 - ②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시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비차별적 대우 부여
- ※ 공기업(state enterprise) : 정부가 직·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소유지분 (ownership interest)을 통하여 통제하는 기관

▣ 협정 발효 이후에도 지정독점·공기업을 설립하고 기존의 지정 독점·공기업 유지 가능

국경간 소비자 보호 (제16.6조)

-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양국 담당기관간 소비자 관련 아래 사항을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
 - ① 소비자 보호 정책에 관한 협의와 자국의 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 교환
 - ② 소비자에 대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을 적발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한 협력 강화
 - ③ 국경간 차원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협의
 - ④ “국경간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OECD 가이드라인”(2003)의 이행 지지

기타 조항

- 가격차별 (제16.4조)
 - 가격차별이 수요 · 공급조건의 고려 등 통상의 상업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, 독점 또는 공기업이 별개 또는 동일 시장 내에서 가격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도록 규정
- 투명성 (제16.5조)
 - 자국 경쟁 집행 정책에 있어 투명성의 가치를 인정하고, 타방 당사국 요청이 있는 경우, ① 자국의 경쟁법 집행 활동, ② 공기업 및 정부 또는 민간소유의 지정독점, ③ 자국 경쟁법에 대한 예외 및 면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
 - 경쟁법 위반을 판단하는 모든 최종 행정결정은 서면으로

작성하고, 결정의 근거가 된 관련사실, 논거 및 법률분석을 기재하도록 규정

- 당사국의 결정과 그 결정을 이행하는 법령을 공포하고, 공포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상대국이 알 수 있도록 공지(영업비밀정보, 기타 자국법에 따라 대중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는 생략 가능)

■ 협의(제16.7조)

-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 개시하고,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상대국에 의해 제기된 사항을 호의적으로 충분히 고려

■ 분쟁해결(제16.8조)

- 제16.1조(경쟁법과 반경쟁적 영업행위), 제16.6조(국경간 소비자 보호), 제16.7조(협의)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도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 이용 불가